

### III. OECD 加入推進 經過 및 保險分野 協議內容

#### 1. OECD 加入推進 經過

우리나라는 世界經濟秩序 형성논의에 참여하고 國內制度和 慣行을 국제규범에 접근시키려는 능동적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 말부터 OECD측과 政策協力을 시도하였다. 이후 1990년 2월 關係長官會議에서 1990년대 중반 OECD가입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OECD 산하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2년 1월에는 제7차 5개년계획 심의회에서 제7차 5개년계획 후반기에 OECD가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4월 28일자로 「대외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무부장관의 명의로 加入推進意思를 OECD측에 통보하였다.

1993년 7월 「新경제 5個年計劃」에서 1996년 중 OECD가입을 목표로 OECD측과 가입교섭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였으며 OECD 閣僚理事會는 1994년 6월 한국과의 가입조건 협의에 관한 권한을 事務局에 위임하였다. 정부는 정식 가입신청 전에 OECD의 모든 주요 위원회에 우선 읍저버로 가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위원회의 해당 부처별로 加入準備團을 결성하여 읍저버加入을 추진하였다. 이 결과 1994년에는 각 위원회별로 우리나라의 읍저버 資格審査가 진행되었으며, 보험위원회의 경우 동년 12월 초의 심사를 거쳐 1995년 1월 읍저버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후, 우리 정부는 1995년 3월 김영삼대통령의 유럽순방 중 OECD가입신청서를 공식으로 제출하였으며 1995년 5월 18일 OECD 常駐代表理事會는 한국과의 加入協議計劃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우리나라는 兩大 自由化規約에 대한 受諾, 留保與否 및 留保時 留保論理 등을 담은 自由化規約受諾草案(Initial Memorandum)을 OECD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OECD측은 동 내용을 심사한 후, 회원국들의 諒의사항을 취합하여 서면질의하고 이에 대해 우리정부가 서면답변하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1995년 10월 OECD 事務局은 우리나라가 제출한 答辯資料를 심사한 후 가입과 관련된 政策協議를 위하여 위드렐국장(Mr. William H. Witherell)을 단장으로 한 高位協議團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였으며 보험분야의 경우 金融·財政 및 企業局(DAFFE)의 行政擔當官(Principal Administrator)으로 있는 라블(Mr. André Laboul)이 방한하여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1995년 11월부터 심사대상 위원회별로 본격적인 加入審査가 시작되었으며 보험분야의 경우 1995년 12월 1일 제56차 보험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1996년 7월 제2차 CMIT/CIME 合同委員會 심사가 종료됨으로써 OECD가입에 필요한 11개 위원회의 심사 및 검토절차가 완료되었다(<表 3> 참조). 심사를 마친 각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정리한 최종의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996년 10월 11일 OECD 이사회에서는 한국을 29번째 회원국으로 초청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表 3> OECD 委員會別 加入審査 및 檢討終了 時期

위 원 회 명	심사 및 검토 종료시기	비 고
해운위원회	'95. 11	심사대상
보험위원회	'95. 12	
금융시장위원회	'96. 2	
환경위원회	'96. 5	
재정위원회	'96. 6	
CIME/CMIT	'96. 7	
농업위원회	'95. 11	정책검토대상
경제발전검토위원회	'96. 3	
노동위원회	'96. 4	
무역위원회	96. 5	

## 2. 保險委員會 帛저버加入 協議內容

1994년 12月 1日 파리에서 개최된 OECD保險委員會에서는 우리나라의 帛저버加入에 관한 協議가 있었다. 동 協의를 위해 OECD사무국에서는 우리가 보낸 「國內保險市場의 現況과 制度」라는 비공식 協의자료를 기초로 하고 사무국의 보험전문가가 수집한 韓國의 保險市場 關聯資料를 정리하여 한국의 帛저버 가입을 協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한 후 각 회원국에 미리 보냈다. 각 회원국대표들은 이 자료를 분석한 후, 각자의 追加의인 質問事項을 정리하여 사무국으로 송부하고, 사무국은 모든 회원국의 질문내용을 취합·정리하여 우리나라의 정책당국(재무부 증권보험국)으로 송부하였다<sup>4)</sup>.

政府에서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질문내용에 관한 答辯書를 준비하여 보험위원회 會議에 참석하였는데 帛저버 가입심사 당시 OECD 會員國들이 關心을 보였던 重要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질문서의 주요 흐름은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特性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자국의 보험제도와와의 차이점이나 자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保險關聯 機構와 制度 등에 관하여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다. 損害保險社의 長期貯蓄性商品에 관한 질문, 火災保險 풀(pool)의 解體理由, 保險社와 他金融機關의 業務領域 問題, 保險商品 認可制度, 自動車保險 經營評價制度, 保險料率 自由化의 구체적 인 사항, 保險販賣組織(모집인과 대리점의 차이 등) 등 우리 보험산업의 특이한 제도를 이해하려는 질문들이었다. 保險監督院과 保險開發院 등 保險關聯 機構에 대한 任務, 豫算調達方式, 人力構造 등에 관하여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 자국과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클럽형식으로 운영되는 OECD 특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豫備會員國의 實情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開放化 現況과 외국사가 우리 시장에 진출했을 시 실제적으로 平等待遇(內國民待遇)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많았는데 이는 각 會員國의 利害와 直結되는 현실적인 질문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보험영업을 원

4)주요 질문내용은 pp. 23-24의 <表 5> 참조.

하는 外國保險社들이 한국정부의 認可를 받기 위해 필요한 條件, 특히 損害保險 合作 會社 設立에 관한 規程 및 기존 合作사의 設立背景과 活動 등에 관한 사항이 많았으며, 아울러 外國社의 國內支店 設立時에 행하는 우리나라의 經濟的 需要審査(ENT)의 基準이 무엇이며 현재 모든 OECD회원국에서 경제적 수요심사를 하지 않는 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그밖에 損害保險의 仲介人制度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고, 再保險과 關聯된 事項으로는 '海外로부터의 保險料率求得에 대한 制限'과 '國內社 優先 出再制度'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韓國은 현재 수준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自由化計劃을 推進할 用意이 있느냐는 것과 外國社가 韓國에 進出하여 營業함에 있어 지금보다 더욱 活動的으로 할 수 있도록 措置를 취할 의사가 있느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保險委員會 正會員加入 協議內容

1995년 12월 우리나라의 정회원 자격심사를 하는 보험위원회를 앞두고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에 보낸 질문서들은 우리 정부가 1995년 7월에 제출한 自由化規約受諾草案의 留保內容과 관련하여 追加 自由化措置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sup>5)</sup>.

구체적으로 보험사설립 허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經濟的 需要審査(ENT)의 實施理由, 細部內容 및 經濟的 需要審査의 廢止 또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의 적용계획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보험사설립과 관련된 그밖의 사항으로서 外國人株式投資限度 自由化計劃, 보험사와 관련한 M&A규정, 손해보험의 경우 미국계 지점만이 있는 이유 및 韓·美 雙務協定이 기타 OECD회원국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保險社設立許可基準에 대한 상세한 내용, 子會社 및 支店設立許可基準의 내용, 外國자회사 및 지점의 金融電算網 접근 허용여부, 保險計理 및 損害査定業에 대한 外國人投資 自由化措

5) 주요 질문내용은 pp. 25-26의 <表 6> 참조.

置計劃 등에 관한 질문이나 자유화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國境間 去來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既허용종목에 대한 확인요청과 함께 생명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 종목의 추가적인 확대허용과 국내진출 외국보험사의 國境間 去來 중개행위 허용을 요구하였다. 또한 재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자유화 일정의 단축을 요구하였으며, 보험중개인(broker)제도의 도입 등 보험판매조직에 관련된 구체적 요구 및 자유화 의사를 타진하는 질문이 많았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1995년 12월 1일 보험위원회 자격심사 회의시 OECD측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국내관련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外國事業者에 대한 內國民待遇原則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전향적인 保險市場自由化計劃을 발표하였다(<表 4> 참조). 회의에서 OECD회원국 대표들은 우리 정부가 발표한 보험시장자유화계획의 구체적인 推進計劃 및 細部內容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表 4> 保險市場 自由化計劃(1995. 12)

- 國境間 去來 許容種目的 擴大(1997.1)
- 經濟的 需要審査(ENT)의 廢止(1997.1)
- 保險仲介人制度의 國內導入(損保:1997.4, 生保:1998.4) 및 對外開放(1998.4)
- 再保險市場의 早期自由化(1997.4)
- 損害查定業, 保險計理業의 對外開放(1998.4)

그 후 1996년 6월의 보험위원회 회의, 1996년 4월 및 7월의 CMIT/CIME 合同委員會 審査 등을 통하여 보험시장 자유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導入方向 및 細部內容에 대한 논의를 거쳐 동년 8월에 우리나라의 정회원 초청을 적극 권장하는 보험위원회 결정을 이사회에 최종 보고서의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表 5> 읍저버加入協議時的 保險分野 OECD 關心事項

구 분	OECD 관심사항
보 험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손해보험의 내용</li> <li>• 자동차보험 경영평가제도의 내용, 시행이유 및 결과</li> <li>• 상품신고제도 내용</li> <li>• 화재보험 pool 폐지 이유 및 결과</li> <li>• 보험사업허가기준</li> <li>• 지급능력기준의 내용</li> <li>•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제도의 내용</li> <li>• 생보사 국내주주의 자격기준</li> <li>• 보험계리인의 역할</li> <li>•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내용</li> <li>• 보험사 경영평가기준과 동 기준에 미달시 제재내용</li> <li>• 보호예탁금 반환기준</li> <li>• 보험회사 해산절차, 보험회사 파산경험 유무</li> <li>• 보험료자유화계획의 내용</li> </ul>
보험관련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감독원의 기구 및 조직</li> <li>• 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li> <li>• 보험개발원의 역할</li> <li>• 생·손보험회의 자율규제기능</li> </ul>
보험시장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대리점(중개인) 자유화계획</li> <li>• 외국보험사업자의 한국보험시장 진출시 기준</li> <li>• 보험사업허가신청시 모든 OECD회원국에 대한 동일한 내국민대우 여부</li> <li>• 손해보험에서 외국사의 자회사 및 신규합작사 진출제한 이유</li> <li>• 손해보험에서 합작형태진출에 대한 규제내용</li> <li>• 경제적수요심사의 실시이유 및 내용, 향후전망, 국내외 보험사에 대한 동등적용 여부</li> <li>• 보험시장접근 자유화계획</li> <li>• 합작생보사의 경우 2인이상의 외국인지분참여 불허이유</li> <li>•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설치에 관한 외국환관리법령 내용</li> <li>• 내국민대우원칙이 보험감독제도 전반에 적용되는지의 여부</li> <li>•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해외투자시 규제유무 관련규정</li> <li>• 외국보험사 국내현지법인의 신상품개발시 제한 유무</li> <li>• 보험업법상의 외국보험사업자의 개념</li> <li>• 외국보험사 국내현지법인도 국내재산 보유의무 유무</li> </ul>

구 분	OECD 관심사항
보험시장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작사와 협지법인에 대한 차별대우 유무</li> <li>• 보험사업에서의 상호주의원칙의 적용 유무</li> <li>• 국경간 거래의 허용내용, 관련규정 및 자유화계획</li> <li>• 국내에서 가입이 불가능한 보험에 대한 국경간 거래의 허용여부</li> <li>• 재보험거래 제한내용 및 조기자유화 실시여부</li> <li>• 생명보험의 재보험자유화계획</li> <li>• 외국재보사의 국내진출에 대한 제한내용, 진출현황</li> </ul>
자 산 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자산운용의 3대원칙 중 공공성의 개념</li> <li>• 자산운용과 관련 투자지역, 통화매칭, 자산/부채매칭, 투자대상 다양화 관련원칙의 유무</li> <li>• 현예금 보유한도이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산운용규제상의 차이</li> <li>• 책임준비금에 상응하는 자산과 자기자본에 상응하는 자산의 구분 여부</li> <li>• 파생금융상품 투자가능여부</li> </ul>
보 험 모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지위와 자격,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차이</li> <li>• 보험판매에 관한 규제 및 감독수단</li> <li>• 보험모집조직의 보수체계와 이에 대한 규제여부 및 방법</li> <li>• 손해보험 공동인수제도</li> <li>• 점포설치 제한이유 및 국내의 보험회사 동등적용 여부</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생보시장의 급성장이유 및 향후전망</li> <li>• 저축성보험상품의 정의</li> <li>• 단체생명보험시장의 현황 및 전망</li> <li>• 최근 생명보험산업의 성장둔화이유</li> <li>• 체신보험 및 농·수협공제시장 동향</li> <li>• 개인연금보험, 제2단계 금리자유화의 상세내용 및 예상효과</li> <li>•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li> <li>• 외국계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이유</li> <li>• 보증보험의 복점유지 이유</li> <li>• 상호회사가 없는 이유</li> <li>• 강제보험의 현황과 이유</li> <li>• 보험사업자의 타사업영위허가 사례</li> </ul>

<表 6> 正會員 加入協議時의 主要 爭點事項

자유화항목	OECD 요구사항	우리나라 조치사항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2와 관련하여 모든 사항에 대해 제한이 없음을 확인</li> <li>· 외국보험사업자 국내지점의 모회사를 위한 중개 또는 대리행위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li> <li>· 불가</li> </ul>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보험의 국경간 거래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 1월부터 생명보험의 국경간 거래 허용</li> </ul>
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보험의 국경간 거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 1월부터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의 국경간 거래 허용</li> </ul>
D/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보험 조기자유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보험완전자유화 일정을 '98년 4월에서 '97년 4월로 1년 앞당김</li> </ul>
D/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취득관련 내·외국보험사업자 차별조치 폐지</li> <li>· 경제적 수요심사(ENT)폐지</li> <li>· 외국정부 출자보험회사의 설립제한 폐지 확인</li> <li>· 외국보험사업자 국내지점의 허가 갱신의무 폐지확인</li> <li>·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허용</li> <li>· 한·미 쌍무협상에 의한 제기준이 다른 OECD회원국에 동등하게 적용되는지 확인</li> <li>·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 설치가능 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보험사의 부동산취득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제도를 1995년말 신고제로 전환</li> <li>· 1997년 1월부터 경제적 수요심사 폐지 및 새로운 허가기준 제정</li> <li>· 1991년 2월 폐지 확인</li> <li>· 1995년 6월 폐지확인</li> <li>· 1998년 4월부터 허용</li> <li>· 확인</li> <li>· 확인</li> </ul>



자유화항목	OECD 요구사항	우리나라 조치사항
D/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의 보 험계약자보호예탁금을 10억원에서 영업기금의 30%로 변경</li> <li>·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립 신청 기각시 해당 사유통보 및 기 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규정마 련</li> <li>· 외국보험사업자 국내지점 대표자 의 국내상주의무 확인</li> <li>· 합작생보사의 외국인지분 제한조 건(외국인지분 49%이상)폐지</li> <li>· 외국보험사업자의 보험사업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허가여부 결정 및 결정내용의 즉시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년 12월 조치완료</li> <li>· 1996년 중으로 규정 마련</li> <li>· 상주의무 있음</li> <li>· 1996년 5월 폐지 확인</li> <li>· 내허가 소요기간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결정사항의 즉 시통보를 위해 관련규정을 1996년 중에 마련할 예정</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 영위되지 않거나 거부 또는 담보능력 초과물건에대한 자 유로운 국경간 거래 허용확인</li> <li>· 국경간 거래 허용종목에 대한 광 고활동 허용</li> <li>· 국경간 거래 허용종목 및 보험영 업, 상품관련 내·외국보험사업자 에 대한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li> <li>· 외국보험중개인의 국내진출을 '97 년부터 허용</li> <li>· 보험중개인 자격요건관련 원보험 과 재보험구분</li> <li>· 생·손보험회 가입시 내·외국사 동등대우 보장</li> <li>· 생보사의 개인상해보험 주계약 취 급 허용</li> <li>· 상품개발과정에 있어 투명하고 객 관적인 규정마련을 위한 제도개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li> <li>· 관련규정 마련을 통해 허용</li> <li>·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li> <li>· 불가</li> <li>·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중개인으로만 구분, 일정자격구비시 겸영가능</li> <li>· 보장</li> <li>· 추후 해결방안 모색</li> <li>· 상품관련규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li> </ul>